

## 첨부

## 이전지역 인재의 범위

### < 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>

- (이전지역 인재)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“이전지역 학교”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  - \* 우리 원 이전지역 :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
  - \* 대학 졸업 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 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 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함
  - \*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: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(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자)

### < 이전 지역 학교 >

#### 가. 이전지역 학교

-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  - (1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
  - (2) 「고등교육법」제24조상의 "분교"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
  - (3) 「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
  - (4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  - (5)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## 나.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

### (1)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

- ① 『경찰대학 설치법』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- ④ 『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- ⑤ 『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- ⑥ 『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### (2)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

## 다.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### (1)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⑦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⑧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⑨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⑩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⑪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### (2)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⑦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⑧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계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시 >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-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※ 다만, 이전지역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